

지배구조내부규범

2016.07.25. 제정

2019.01.30. 개정

2023.10.27. 개정

2024.02.27. 개정

2025.03.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규범은 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경영의 적법성,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회사 정관 및 타 내부규정 등과 함께 이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1) 이 규범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상법 등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범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2)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제정 및 폐지) (1) 이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통제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경우나 단순한 용어 변경 등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제정·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규범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2)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1)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한다.

(2)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 (1)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정직성을 가져야 한다.

(2) 상임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임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9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1)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이사회 규정 등 다른 규정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1) 이사는 주주 및 회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의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단,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6)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사외이사는 본인이 겸직하고 있는 외부 기관과 회사 및 관계회사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및 당해 외부 기관에서 사임하거나 그 직무, 성격, 업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고 본인의 사임 여부에 관한 동 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3년 이하
2. 사외이사: 2년 이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단 회사에서 5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의 퇴임 기준과 절차) (1)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 만료
2. 사직
3.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해임하기로 하는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2)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법정수를 결하지 않을 때는 그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임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13 조 (이사회회의 소집절차)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되, 매분기마다 적어도 1 회 이상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중 1 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이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 의안 및 참고자료는 적어도 회의일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4 조 (의결권의 행사)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이사회 의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회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의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5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이사회는 이사회 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초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3)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시에 참고한다.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 16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삭제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

6. 내부통제위원회

- (2)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3)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경영위원회) 삭제

- 제18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2)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3)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4)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최대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5)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6) 회사의 감사부서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7)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그 직무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따른다.
- (10)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 중 정관과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보수위원회) (1) 보수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보수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4.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5) 회사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한다.

(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감사위원, 업무집행책임자,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등 임원의 유형별 총액(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보수총액)으로 작성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
3.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가.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나.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다.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라.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마.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바.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함)

(7)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 중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보수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 중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위험관리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1)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지배구조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지배구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및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초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23조 (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총칭한다.

제24조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5조 (등기이사 아닌 임원의 자격요건) (1)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전문적 지식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상 임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제26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5)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제28조제3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제28조제3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6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제27조 (임원의 선임) (1) 등기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제11조(이사의 선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 선임 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4)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이상(그룹사 내의 임원으로서의 위촉계약기간 포함), 연임 시 1년 이내로 한다.

(5)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임원의 퇴임) (1) 등기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12조에 따른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회사의 인사규정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임원으로서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 담당임원, 재무관리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를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임원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 (임원 및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임원 및 임원후보자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수) 임원의 (i) 성과에 대한 평가주체·방법·절차·지표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ii) 임원 보수의 구성내역·지급방법 등 보수체계는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31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1) 회사는 하나금융그룹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안정적 경영승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개시결정 시기를 정한다.

(3)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4)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원칙 등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31조의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회사의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업무
2.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32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1)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33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공시) (1) 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의 예비후보 추천을 받아 결정하며,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한다.

(2) 회사는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후보 제안자 및 최고경영자후보와의 관계
4. 최고경영자후보와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6. 최고경영자후보자 추천이유
7. 최고경영자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최고경영자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4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1)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이사의 선임) 및 제12조(이사 퇴임기준과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6.08.0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배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이 될 경우, 제20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9.01.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3.10.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4.02.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5.03.20.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적용시기) 제9조 (1) 및 (3)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안) 신규대비표

1. 개정 사유: 지배구조법(2024. 1. 2.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의무 부여 및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할 반영함

2. 시행예정일: 2025 년 3 월 20 일

3. 변경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 3 조 (제정 및 폐지) (1) 이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제 3 조 (제정 및 폐지) (1) 이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u>내부통제위원회</u>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지배구조법 제 22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개정사항 반영
제 9 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1)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5. (생략) 5 의 2 <신설> 6~8. (생략)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2 (생략)	제 9 조 (이사회 권한과 책임) (1)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 <u>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u> 을 감독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u>5 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6~8. (생략)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2 (생략)	지배구조법 제 15 조 4 항 개정사항 반영 지배구조법 15 조 1 항 5 의 2 개정사항 반영

3. 이사회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생략)	3. 이사회 규정 등 다른 규정 또는 <u>관련법령에서</u>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생략)	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4 제 2 항 1 호내지 4 호 개정사항 반영
제 16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한다. 1~5. (생략) 6. <신설>	제 16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한다. 1~5. (생략) 6. <u>내부통제위원회</u>	지배구조법 16 조 1 항 5 호 개정사항 반영
제 21 조의 2 <신설>	제 21 조의 2 (내부통제위원회) (1) <u>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u> <u>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u> <u>3. 지배구조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u> <u>4. 지배구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u> <u>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및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2) <u>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지배구조법 제 22 조의 2 개정사항 반영
	<u>부칙</u> <u>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5.03.20 부터 시행한다.</u> <u>제 2 조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적용시기) 제 9 조 (1) 및 (3)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한다.</u>	시행일